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 마련 등 >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98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 사항 포함	2
2.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디자인 지침 마련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03.

다. 회 부 일 : 2023. 9.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 사항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공포 후 시행전 법률 (시행 2025.4.23. 법률 제20486호)	개정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사회적 약자를 고려 한 공공디자인 구현 에 관한 사항</u> <u>7. (현행 제6호와 같 음)</u> ④ ~ ⑥ (현행과 같 음)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전문인력 육성,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0조²⁾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서 ①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 향상 및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가로 환경 및 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②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웹사이트 등의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때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최근 장애 유무, 나이 등과 관계없이 시설 및 정보에 대한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 계층의 시설·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경우 동일한 개정사항을 포함한 동법 개정안³⁾이 2024년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률⁴⁾은 2025년 4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입법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27호),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486호

2.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디자인 지침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준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침 마련)</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 5. (생략)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있어 제6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10조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건축 환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관계부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물 관련 지침 현황]

지침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건축물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열람석, 공중전화 등)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동편의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시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및 기준 규정 (개별시설, 지자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규정 (가드레일,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관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제7조의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⁵⁾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⁶⁾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부처 간 의견이 논의·조정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을 통해 일부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 사항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므로, 소관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지침을 통합하여 일관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동일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